
입 법 정 보

2017-3호

섬기는 일하는 가까운
강원도의회

의회 사무처
(수석전문위원실)



목 차



1.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고용노동부)	5
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5
3.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6
4.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조달청)	7
5. 「국민건강보험법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	8
6.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9
7.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9
8.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9
9.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법제처)	10
10.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무부)	10
11. 한국법학원 육성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법무부)	11
12. 한국법학원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무부)	11
13.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정책협의회 운영 규정 일부개정령(안) (행정자치부) ..	12
14.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산업자원부)	13
15.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문화재청)	14
16.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산업통상자원부)	15
17. 원양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해양수산부)	15
18.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16
19. 문화재보호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문화재청)	17
20.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법무부) ..	17
21. 가석방자관리규정 일부개정령(안) (법무부)	18
22. 「의료급여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18
24.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고용노동부)	20
25.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고용노동부)	20

26. 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민안전처)	22
27.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국민안전처)	23
28.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일부개정령(안) (국민안전처)	23
29. 「소방공무원교육훈련규정」일부개정령(안) (국민안전처)	24
30.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경찰청)	24
31.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교육부)	25
32.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교육부)	25
33.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26
34. 법제업무 운영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법제처)	26
35. 법제업무 운영규정 일부개정령(안) (법제처)	28
36.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 ...	29
37.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30
38. 경찰공무원 징계령 일부개정령(안) (경찰청)	30
39. 검찰사건사무규칙 일부개정령(안) (법무부)	31
40.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인사혁신처)	31
41. 여성가족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여성가족부)	32
42. 전자정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행정자치부)	32
43.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문화재청)	33
44. 중소기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 (중소기업청)	33
45.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농림축산식품부) ..	34
46.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해양수산부)	35
47.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안) (해양수산부)	36
48. 새만금개발청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새만금개발청)	37
49.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식품의약품안전처)	37

50. 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식품의약품안전처)	38
51.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문화체육부) ...	38
52. 「중장기전략위원회 규정」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	39
53.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안전처)	39
54.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문화체육관광부)	40
55.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방송통 신위원회)	40
56.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41

1.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인) (고용노동부)

- 예고일자 : 2017. 1. 23. • 마감일자 : 2017. 1. 31.
- 구인자 또는 구직자는 구인·구직신청을 하려는 경우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별지서식을 작성하여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나, 현재 사용하는 구인·구직신청서는 작성항목이 많아 사용 하지 않는 항목을 정리하여 필수항목 중심으로 간소화하는 등 구인·구직자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 가. 구인·구직신청서 별지서식을 별지와 같이 변경함(제2조제1항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1호의2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2호의2서식, 별지 제2호의3서식)
- 나. 별지서식 내용에 포함된 구직등록 확인증을 별지 제2호의4서식으로 신설하여 구직등록 확인 및 발급의 편의성을 도모하고자 함(제2조제3항 개정)

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인) (국토교통부)

- 예고일자 : 2017. 1. 23. • 마감일자 : 2017. 3. 6.
- 구 「임대주택법」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으로 전부개정됨에 따라(법률 제13499호, 2015.12.29 시행), 뉴스테이 및 민간임대주택 공급 활성화와 임대관리업 육성기반 마련을 위한 제도 개선, ‘맞춤형 주거지원을 통한 주거비 경감방안’ (2016.4.28)으로 결정된 주택 임대관리업 등록기준완화 등의 규제 개선 등을 시행하려는 것임
- 가.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 변경 허용 (안 제3조)
현행법에서는 임대사업자 등록시 정한 임대의무기간 변경이 허용되지 않아 장기임대 재고 확보에 걸림돌로 작용함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4년 단기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경우라도 해당 주택을 8년 장기임대주택으로 변경을 허용함.
- 나. 임대사업자 등록·변경·말소시 제출서류 간소화 (안 제2조부터 제5조까지)
행정자치부의 개인정보 보호 계획의 일환으로 제출 서류 간소화가 추진됨에 따라, 임대사업자 등록·변경시와 주택임대관리업 등록시에는

주민등록표 등본 대신 주소지 확인이 가능한 주민등록표 초본을 제출하도록 하고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시에는 본인 여부 확인만 필요하므로 주민등록증을 제시하도록 간소화 함.

다. 임대주택 양도 허가권자 명확화 (안 제17조)

임대주택 양도 허가권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 되어 있으나, 임대주택 소재지, 임대사업자 등록지간 관할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업무상 혼란이 발생하고 있어 특별수선 충당금 적립 관련 업무처리의 편의를 고려하여 임대주택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양도 허가할 수 있도록 명시함

3.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 예고일자 : 2017. 1. 23. • 마감일자 : 2017. 3. 6.

○ 구 「임대주택법」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으로 전부개정됨에 따라(법률 제13499호, 2015.12.29 시행), 뉴스테이 및 민간임대주택 공급 활성화와 임대관리업 육성기반 마련을 위한 제도 개선, ‘맞춤형 주거지원을 통한 주거비 경감방안’ (2016.4.28.)으로 결정된 주택 임대관리업 등록기준 완화 등의 규제 개선 등을 시행하려는 것임

○ 가. 기업형 임대사업자 등록시 주거용 오피스텔도 포함 (안 제3조)

1~2인 가구 증가, 도심 내 소형주택 선호 추세 등을 감안하여 기업형 임대사업자 등록시 주거용 오피스텔인 준주택도 등록 가능하도록 함.

나. 토지지원리츠, 정비사업 우선협상대상자의 기업형 임대사업자 등록 허용 (안 제4조)

토지지원 리츠의 기업형 임대사업자 등록을 허용하되, 토지만을 소유한 점을 감안하여 주택사업자 등과 공동명의로 등록하도록 하고, 정비사업 연계 기업형임대주택사업자 선정기준에 따라 선정된 우선협상대상자가 정비사업으로 건설되는 주택을 우선공급 받을 수 있도록 기업형 임대사업자 등록을 허용함.

다.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 변경 허용 (안 제4조)

임대사업자가 4년 단기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경우라도 해당 주택을 8년 장기임대주택으로 변경을 허용함.

라. 주택임대관리업 등록기준 개선 (안 제6조)

주택 임대관리업의 등록기준이 엄격하여 임대관리업 활성화에 지장이 있고, 미등록 업체가 난립하여 임차인 피해 등 부작용 우려가 있으므로, 위탁관리형의 등록 주택 수 기준과 자기관리형 자본금 요건을 완화하고, 전문인력 요건에 “부동산 관련 회사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으로서 부동산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을 추가함.

마. 비도시지역이 포함된 촉진지구의 최소면적기준 명확화(안 제18조)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로 도시지역 및 도시지역과 인접한 지역을 포함하여 지정할 경우에 대한 개발 최소면적 기준이 없어, 도시지역과 도시인접지역 최소면적의 합(2만5천㎡)으로 적용하고 있는 상황으로, 합리적인 기준으로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이 혼재된 경우라도 도시지역과 인접한 지역의 촉진지구 지정 기준(2만㎡)을 적용하는 것으로 완화함

4.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인) (조달청)

- 예고일자 : 2017. 1. 24. • 마감일자 : 2017. 1. 31.
- 조달청에 국가계약법령 유권해석 업무 강화를 위해 필요한 인력 2명(6급 2명), 공공부문 클라우드 서비스 도입에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 국고보조금 사업 대상 설계적정성 검토에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7급 1명), 벤처·창업기업제품의 공공조달판로 지원을 위한 ‘벤처나라’ 운영에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 외자구매 R&D장비 신규 수요 대응에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을 각각 증원하고, 공공조달시장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조달관리국과 공공물자국을 신설하는 등 기구를 개편하는 내용으로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 호, 2017. . . 공포·시행)됨에 따라 증원되는 인력의 직급별 정원을 반영하는 한편, 기구 개편에 따른 과 소속 및 명칭을 변경하여 기획조정관에 국제협력담당관을 재배치하고 조달관리국에 전자조달기획과, 전자조달관리과, 공정조달관리과, 조달등록팀 및 2019. 2. . . 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조달가격조사과를 신설하며, 공공물자국에 원자재비축과, 해외물자과, 물품관리과, 국유재산기획과, 국유재산관리과를 설치하고, 과 재배치에 따른 업무 분장사항을

조정하며, 효율적인 조직 운영과 인력관리의 효율화를 위해 원자재총괄과와 원자재비축과를 통합하여 남은 인원과 직급을 상향(4·5급 1명 → 4급 1명) 조정하여 신설되는 2개과(공정조달관리과, 조달가격조사과) 등에 재배정하고, 과 소속 변경에 따른 조달청 정원 내 인원을 재배정하며, 지방조달청 정원 3명 중 1명(6급 1명)은 조달청으로, 2명(7급 2명)은 조달교육원으로 재배정하는 한편, 퇴직으로 결원이 발생한 관리운영직 공무원의 정원(사무운영9급 3명, 기계운영6급 1명)을 일반직 내 유사직렬로 전환하며, 총액인건비제로 운영 중인 팀 중 기한이 만료(2017.3.31.)되는 조달회계팀과 조달등록팀의 기한을 2020.3.31일까지 연장하며,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제5항에 따른 임기제공무원 중 정보관리과장을 전자조달관리과장으로,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을 물품관리과장으로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5. 「국민건강보험법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 예고일자 : 2017. 1. 24.
- 마감일자 : 2017. 3. 6.

- 진료비 세부내역을 환자에게 제공시 양식이 의료기관별로 각기 다르고, 발급 비용 관련 불만이 제기되는 등의 환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진료비 세부내역서 표준서식을 마련하고 발급비용 근거를 명확히 하며, 질병군 포괄수가 영수증 서식을 신설하는 한편, 요양급여대상·비급여대상 여부(기존기술 여부) 확인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절차를 개선하려는 것임

또한, 선별급여의 정의, 적합성 평가 등 관련 근거를 규정한 국민건강보험법(법률 제13985호, 2016.3.22. 공포, 2017.3.23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선별급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 취지에 맞게 개선하려는 것임. 더불어 급여중인 약제의 직권조정 사유의 근거를 마련하고, 직권조정 시 청구기간 등을 고려한 급여 유예기간을 명확히 하는 등 현행 규정 중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6.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 예고일자 : 2017. 1. 24. • 마감일자 : 2017. 3. 6.
- '14-'18 건강보험 중기보장성 강화계획에 따라 뇌사장기기증자의 장기적출시 수혜자가 부담하던 요양급여비용을 전부 면제하도록 하려는 것임
- 또한 지역가입자 중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입직 및 이직 자료를 연계하여 그에 따른 보험료 부과 및 조정이 적기에 이루어지도록 하고, 지역가입자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 참가율 점수에 산정되는 자동차의 경우 차령 15년 이상은 그 대상에서 제외하고자 함
- 더불어, 건강보험 사업 수행 등에 따른 국가, 지방자치단체, 요양기관 등에 대한 공단의 제공 요청 자료의 범위를 아래와 같이 확대하여 부과·징수 및 위탁업무 등과 관련 공단의 업무를 효율화하고자 함

7.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 예고일자 : 2017. 1. 24. • 마감일자 : 2017. 3. 6.
-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위임한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를 명확하게 정하려는 것임
-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위임한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를 명확하게 정하려는 것임(안 제34조)

8.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 예고일자 : 2017. 1. 24. • 마감일자 : 2017. 2. 13.
- 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선별급여”의 정의, 본인부담 비용, 실시기관 제한 등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규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법률 제13985호, 2016.3.22. 공포, 2017.3.23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 법 제41조의4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선별급여의 대상을 정하고 선별

급여의 적합성 평가는 5년 이내 항목별로 평가 시점을 결정하는 것으로 정함(안 제18조의4 신설).

2) 법 제44조의 개정으로 본인부담상한제의 법률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자구 및 체계를 정리하고 관련 규정을 마련함(안 제19조 개정).

3) 상대가치점수 구성요소를 명확히 하고, 계약의 내용과 상대가치점수 구성요소 규정을 분리함(안 제21조의2 신설).

4) 요양급여 항목의 원활한 가격 결정을 위해 보험자부담금을 정하는 “보상가격제” 를 도입하고 본인부담액 신고 및 신고상한액 설정, 인터넷 홈페이지 공개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안 제 21조의3 신설).

5) 선별급여의 근거 규정 상향 조정에 따라 현행 근거 규정인 별표 2. 제4호를 정비하고 보상가격 제 적용에 따른 예외 규정을 마련함(안 별표 2. 제4호 개정).

9.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법제처)

- 예고일자 : 2017. 1. 24. • 마감일자 : 2017. 2. 3.
- 법제 분야 교류 및 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총액인건비제로 운영되고 있는 법제교류협력팀을 법제교류협력담당관으로 전환하면서 4·5급 1명의 직급을 4급으로 상향 조정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증원하는 한편, 법령 등을 알기 쉽게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을 증원하고, 법제정책국과 법제지원국의 분장사무를 일부 조정하는 내용으로 「법제처 직제」가 개정될 예정임에 따라, 기획조정관 밑에 법제교류협력담당관을 두도록 하고, 증원된 인력의 직급 별 정원을 반영하며, 각 국의 분장사무를 일부 조정하는 한편,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는 직위를 외교부 소관 사항을 담당하는 법제관에서 법제교류협력담당관으로 변경하고,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 할 수 있는 정원을 1명(6급 1명) 증원하며, 운전 9급 1명의 직급을 7급으로 상향 조정하려는 것임

10.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무부)

- 예고일자 : 2017. 1. 24. • 마감일자 : 2017. 2. 13.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규정은 개별법 규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우선적으로 적용되나, 이 법에 「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 중복되거나 배치되는 규정이 남아있어 과태료 징수 등 절차에 관한 법 적용의 혼선 및 국민 불편을 초래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 중복되거나 배치되는 과태료 징수 등 절차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으로 일원화 하려는 것임
- 과태료 처분 불복 이의절차 조항, 과태료 재판 조항, 과태료 체납처분 준용 조항 삭제(안 제117조 제5항부터 제7항)

11. 한국법학원 육성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법무부)

- 예고일자 : 2017. 1. 24. • 마감일자 : 2017. 2. 13.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규정은 개별법 규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우선적으로 적용되나, 이 영에 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 중복되거나 배치되는 규정이 남아있어 과태료 징수 등 절차에 관한 법 적용의 혼선 및 국민 불편을 초래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 중복되거나 배치되는 과태료 징수 등 절차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으로 일원화 하려는 것임
- 가. 과태료 부과 절차 조항, 과태료 징수 절차 조항 삭제(안 제2조 제1항, 2항, 안 제3조)
- 나. 과태료 부과 기준 조항 자구 수정(안 제2조 제3항)

12. 한국법학원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무부)

- 예고일자 : 2017. 1. 24. • 마감일자 : 2017. 2. 13.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규정은 개별법 규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우선적으로 적용되나, 이 법에 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 중복되거나 배치되는 규정이 남아있어 과태료 징수 등 절차에

관한 법 적용의 혼선 및 국민 불편을 초래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 중복되거나 배치되는 과태료 징수 등 절차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으로 일원화 하려는 것임

13.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정책협의회 운영 규정 일부개정령 (인) (행정자치부)

- 예고일자 : 2017. 1. 25. • 마감일자 : 2017. 3. 6.
- 지방행정의 종합성·현지성을 제고하고, 국정의 통합성 확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특별지방행정기관 간 지역단위 협의회를 신설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련된 경제정책 등에 대하여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의 효율적인 정책 협의를 위하여 지역경제정책협의회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 가.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정책협의회의 목적 추가(안 제1조)
정책협의회 설치 목적으로 중앙행정기관과 자치단체 간 정책 협의 외에 상호 의견교환을 추가함.
- 나.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정책협의회의 기능 추가(안 제2조)
지방행정과 관련한 국가 정책에 대해 자치단체에서 협의 요청한 사항, 우수정책 전파 및 확산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할 수 있도록 함.
- 다. 지역경제정책협의회 설치 규정 신설(안 제2조의2 신설)
중앙행정기관과 자치단체 간 효율적인 경제정책 협의를 위하여 행정자치부장관 소속으로 지역경제정책협의회를 두고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도록 함.
- 라. 지방행정·공공기관협의회 설치 규정 신설(안 제8조의2 신설)
 - 1) 자치단체와 특별지방행정기관 간 상호 협력 증진 및 공동 문제 협의를 위해 지방행정·공공기관협의회를 두도록 함.
 - 2) 지역개발, 환경, 교육, 경제 등 분과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그 밖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함.

14.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산업자원부)

- 예고일자 : 2017. 1. 25. • 마감일자 : 2017. 3. 6.
- 신기술 인증 제도, 신제품 인증 제도 및 우수재활용제품 인증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업무 권한의 주체를 명확히 하고, 인증제도의 공정성과 투명성 향상을 위하여 제도의 운영과 관련된 업무를 관리하는 총괄기관과 인증심사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평가기관을 지정·운영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함
- 가. 우수재활용제품 인증 제도의 운영(안 제17조제1항, 제18조의6, 제18조의7 및 제18조의8)
기 운영 중인 ‘우수재활용제품 인증 제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동 인증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명확히 하여 인증 수요자의 혼란을 줄이고자 함
우수재활용제품 인증 제도의 인증기준 및 대상, 인증절차, 유효기간 등 인증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나. 인증 예정 품목에 대한 의견수렴 기간 연장(안 제18조제4항)
신기술 등 인증 예정 공고 시, 해당 인증과 이해관계에 있는 자로부터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위해 의견수렴 기간을 연장하고자 함
- 다. 총괄기관의 지정(안 제18조의9)
독립성있고 전문인력을 갖춘 민간 수탁기관이 수행하는 인증업무에 대한 상시 관리·감독을 위해 장치 마련 필요
이를 위해 대외 공신력을 갖춘 공공기관을 인증업무 수탁기관을 관리하는 총괄기관으로 별도 지정하여 운영하고자 함
- 라. 평가기관의 지정(안 제18조의10)
인증제도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 등을 제고하기 위해 독립성 있는 기관을 평가기관으로 지정하여 인증업무 수탁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고자 함
- 마. 총괄기관과 평가기관의 지정 취소(안 제18조의11)
인증업무를 관리·감독 또는 수행하는 총괄기관 또는 평가기관에 대한 지정 취소 요건 등에 대해 규정하고자 함
- 바. 신제품인증의 유효기간 연장을 1회로 규정(안 제20조제1항)

과도한 유효기간 연장효과(최장 9년)를 유발시킨 ‘추가연장’ 제도는 인증제품의 수출 또는 수입대체 효과를 높이고자 하는 도입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되어 유효기간 연장을 1회로 조정

사. 신제품인증 관련 업무 권한의 위임·위탁 사항 명확화(안 제57조)

신제품인증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국가기술표준원, 총괄기관 및 평가기관의 업무 권한 범위를 명확히 명시함으로써 인증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15.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문화재청)

• 예고일자 : 2017. 1. 25. • 마감일자 : 2017. 1. 31.

○ 문화재청에 문화재보호 민관협력 기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인력 1명(전문경력관 가군 1명), 문화재 재난 안전관리 통합시스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인력 1명(전문경력관 나군 1명)을 각각 증원하고, 한국전통문화대학교에 교육체제 개편으로 신설되는 학부 및 대학원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인력 4명(전임교수 3명, 조교 1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되고, 문화재청장 소속의 책임운영기관인 국립문화재연구소에 수도권문화유산 종합학술기능 강화를 위해 신설되는 ‘국립강화문화재연구소’ 운영에 필요한 인력 7명(4급1, 5급1, 6급1, 7급1, 8급1, 연구관1, 연구사1) 및 ‘자연문화재연구실’ 시설관리 보강에 필요한 인력 1명(7급1)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증원되는 인력의 직급별 정원을 반영하는 한편, 방호직 및 운전직의 타 직렬과의 형평성 문제 해소 등을 위해 방호직 4명과 운전직 2명의 직급을 상향조정하고, 신설기구 성과평가제 적용에 따라 한시정원을 국립문화재연구소에 두는 규정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 지방문화재연구소 설치 상한 조정(안 제20조의4제1항)

국립강화문화재연구소 신설에 따라 국립문화재연구소 소속으로 6개 이내의 지방문화재연구소를 둠

나. 국립문화재연구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규정 개정(안 제22조제12항)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른 한시정원은 제외하는 규정 추가

다. 한시정원 규정 신설(안 제24조)

국립문화재연구소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른 한시정원 및 존속기한을 규정한 조항 신설

16.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인) (산업통상자원부)

• 예고일자 : 2017. 1. 25. • 마감일자 : 2017. 3. 6.

○ 지식산업센터 내에 설치할 수 있는 지원시설에 오피스텔을 추가하는 등 현행법령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수정·보완하고자 함.

○ 가. 지식산업센터 내에 업무시설(오피스텔) 설치 허용 (안 제36조의4제2항)

지식산업센터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근로·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지식산업센터 내에 오피스텔 설치를 허용

나. 구조고도화사업을 추진하지 않더라도 산단 내 오피스텔 건축 허용 (안 제6조제6항)

산업단지 지원시설구역에 입주할 수 있는 지원기관에 오피스텔 설치·운영업을 추가하여 구조고도화사업을 추진하지 않더라도 산단 내에 오피스텔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

다. 타법 개정사항 반영 (제27조의3 제3호 삭제)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사항(대통령령 제26512호, 2015. 9. 8.)을 반영하여 산집법상 관련 조항을 삭제

17. 원양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인) (해양수산부)

• 예고일자 : 2017. 1. 25. • 마감일자 : 2017. 3. 6.

○ 최근 서아프리카 수역 및 북태평양 수역 등에서 대중성 어종을 중심으로 우리 국민 또는 제3국적선에 의한 불법어업 행위가 지속 발생하여 국제적인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동 수역에서 불법으로 어획된 수

산물의 국내 반입·유통을 차단함으로써 불법어업을 근절하기 위한 것임

- 가. 해외수역에서 발생하는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 방지 및 불법 어획된 수산물의 국내 반입 차단을 위해 합법 어획을 증명하는 어획 증명서 첨부 의무화(안 제23조제1항제3호 신설)
- 나. 법률유보 원칙에 따라, 현행 고시에 규정된 지역수산기구 및 러시아 수역 관리어종(다랑어, 게류 등) 적재선박이 합법어획 사실을 증명하는 증명서 제출 규정을 시행규칙에 포함 개정(안 제23조 제1항제1호, 제2호)
- 다. 현행 「원양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일부 미비점 보완 및 「행정효율과 협업추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행정자치부령 제76호, 2016. 7. 11. 시행)의 서식 설계기준에 부합하고 ‘14. 8. 7일부터 시행된 「개인정보 보호법」(법률 제11990호, 2013.8.6 공포)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관련 서식을 정비

18. 환경부의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 예고일자 : 2017. 1. 25. • 마감일자 : 2017. 2. 1.
- 환경부 환경정책실에 2019년 2월 28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통합허가제도과를 신설하여,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을 효과적으로 줄이기 위하여 배출시설 등을 통합 관리하는 통합관리 사업장의 배출시설 등에 대한 허가·관리 등을 관장하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한시정원 5명(4급 1명, 5급 2명, 6급 1명, 연구관 1명)을 증원하며, 환경부에 UN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국내 이행을 위한 정책조정·협의 기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환경분야 지진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하여 인력 1명(5급 1명)을 증원하는 한편, 국립환경과학원에 왜관 수질안전측정센터 운영 인력 1명(연구사 1명), 유역·지방환경청 및 수도권대기환경청에 유해대기오염물질 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9명(6급 4명, 7급 5명), 유역·지방환경청에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 강화를 위한 인력 7명(7급 2명, 8급 5명), 한강유역환경청에 국제적멸종위기종 관리체계 개선에 따른 이행 인력 1명(7

급 1명), 지방환경청에 기록관리 전문인력 배치를 위한 인력 2명(연구사 2명)을 각각 증원 하고, 운전직 사기진작을 위하여 운전서기보 3명을 운전주사, 운전주사보 및 운전서기로 각각 직급 조정하는 내용임

19. 문화재보호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문화재청)

- 예고일자 : 2017. 1. 25. • 마감일자 : 2017. 3. 7.
- 「문화재보호기금법」 제5조 개정(법률 제14435호, 2016.12.20. 공포, 2016.12.20. 시행)으로 기금의 용도에 ‘폐사지 등 비지정문화재 조사 및 연구’가 추가됨에 따라 관련 하위 법령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 기금의 용도에서 법으로 상향된 “폐사지 등 비지정문화재 조사 및 연구” 조항 삭제(안 제4조 제2호 삭제)

20.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법무부)

- 예고일자 : 2017. 1. 25. • 마감일자 : 2017. 3. 6.
-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기관 감정평가업무의 공정성 제고 제도개선 권고를 반영하여 교정법인의 기본재산 처분 시 감정평가법인이 아닌 감정평가업자도 감정평가업무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한편,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로 전부개정 되고,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인용 법령의 제명을 변경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 교정법인이 기본재산 처분에 관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려는 경우 첨부하여야 할 서류인 감정평가서에 대하여 감정평가법인 뿐만 아니라 감정평가사가 작성한 감정평가서도 제출할 수 있도록 함(제5조 제1항 제2호)

21. 가석방관리규정 일부개정령(안) (법무부)

- 예고일자 : 2017. 1. 25. • 마감일자 : 2017. 3. 6.
- 행정자치부의 주민등록 등·초본 제출요구 법령 정비 계획에 따라 1인에 대한 정보 확인을 위해 전체 세대원의 주민번호가 기재된 등본 대신 본인에 대한 정보만 기재된 초본을 제출하는 것으로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 가. 가석방자가 국외 이주 또는 1개월 이상 국외여행을 위해 관할경찰서의 장에게 신고를 하는 경우 담당공무원이 가석방자의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하도록 하던 것을 “초본”을 확인하는 것으로 개선(제13조 제2항)
- 나. 별지 제3호서식의 담당자 확인사항 중 “주민등록표 등본”을 “주민등록표 초본”으로 변경함

22.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 예고일자 : 2017. 1. 26. • 마감일자 : 2017. 2. 15.
-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정신질환에 대하여 초기 단계의 적극적인 외래진료를 활성화하고, 합리적 의료이용과 효과성 제고를 위해 외래 본인부담률을 조정하고자 함
- 가.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의 정신질환에 대한 병원급 이상 외래진료시 본인부담률을 15%에서 조현병은 5%, 그 외 정신질환은 10%로 인하(안 별표 1 제2호 카목)
- 나. 의료급여 1, 2종 수급권자의 정신질환에 대한 비정형 향정신성 장기 지속형주사제 투여시 본인부담률 10% 적용(안 별표 1 제1호 사목, 제2호 타목)

23.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행정자치부)

- 예고일자 : 2017. 1. 26. • 마감일자 : 2017. 1. 31.

- 행정자치부에 재난안전상황실 설치에 따른 운영 인력 1명(6급 1명)과 정부3.0 글로벌 협력 강화 및 정책과정 국민참여·일하는 방식 범정부 확산 등을 위해 필요한 인력 3명(5급 2명, 6급 1명)을 각각 증원하고, 공공데이터 품질 제고 및 조직관리시스템 구축·민원서비스 평가 등을 위한 인력 3명(5급 3명)을 증원하며, 지능정보기반의 행정혁신 및 지방 인사혁신을 위한 인력 3명(5급 2명, 6급 1명)과 차세대 지방세 정보화 추진 및 새마을 금고의 지역금융 지원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을 각각 증원하고, 지방 공기업 육성 지원 및 지역경제 총괄 지원 기능 등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방재정세제실을 지방재정경제실로 변경하면서, 부 내 지방재정 및 지역경제 기능을 재편하여 2019년 2월 28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지역경제지원관을 신설하고, 지방공기업 경영 혁신 추진 등을 위해 2019년 2월 28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공기업정책과를 신설하며 그에 필요한 한시정원 3명(4급 1명, 5급 1명, 6급 1명)을 증원하고, 지방행정연수원에 지방핵심인력 역량 평가 등을 위한 인력 2명(4급 또는 5급 1명, 7급 1명)과 국가기록원에 대통령기록물 보존장비 운영 인력 4명(연구사 4명)을 각각 증원하며, 정부청사관리본부에 자체 관리 감독팀 신설 및 공간관리 기능 강화를 위한 인력 4명(4급 또는 5급 2명, 6급 1명, 7급 1명)을 증원하고, 방위사업청이 과천청사관리소로 이전함에 따라 방위사업청 청사관리 인력 6명(관리운영직군 6급 1명, 7급 2명, 8급 3명)을 행정자치부로 이체하는 내용 등으로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가 개정(대통령령 제 000호, 2017. 2. 00. 공포·시행)됨에 따라 증감되는 인력의 직급별 정원을 반영하는 한편, 하위직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9급 정원 2명을 8급 정원 1명과 6급 정원 1명으로 각각 상향 조정하며, 정부통합전산센터에 사이버위협 대응과 센터 방호 및 클라우드 업무전환을 위해 필요한 인력 총 3명(5급 1명, 7급 2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 개정(대통령령 제000호, 2017. 2. 00. 공포·시행)됨에 따라, 증원된 인력을 정부통합전산센터의 정원표에 반영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의 개선·보완 및 하부 기구의 분장사무를 일부 조정하려는 것임

24.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인)」 (고용노동부)

- 예고일자 : 2017. 1. 26. • 마감일자 : 2017. 3. 7.
- 근로자 재산형성 및 노사협력 증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우리사주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비상장법인의 우리사주 환매수 의무화 등을 내용으로 「근로복지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4498호, 2016.12.27. 개정, 2017.6.28. 시행)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임
- 1) 비상장기업 우리사주의 환금성(換金性) 강화를 통해 우리사주제도 도입을 촉진할 수 있도록 회사의 환매수를 의무화하면서 우리사주조합이 회사를 대신하여 조합원계정의 우리사주를 매입할 수 있도록 회사가 우리사주조합기금에 출연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그 출연금은 해당 목적에 사용되어야 하나 현행 규정은 직전 회계연도 말까지 적립된 우리사주조합기금을 해당 회계연도가 시작된 후 6개월 이내에 우리사주 취득에 사용하도록 되어 있어 환매수 준비금에 대한 예외를 규정할 필요가 있음
- 2) 비상장법인이 우리사주 환매수 준비금으로 우리사주조합기금에 출연하는 재원에 대해서는 재원 마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취득기한의 예외를 규정하고자 하며, 이를 통해 비상장법인의 환매수가 원활하게 시행되어 우리사주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25.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인) (고용노동부)

- 예고일자 : 2017. 1. 26. • 마감일자 : 2017. 3. 7.
- 근로자 재산형성 및 노사협력 증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우리사주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우리 사주 수탁기관의 업무지원 범위 확대, 비상장법인의 우리사주 환매수 의무화, 우리사주조합을 통한 회사인수 지원 등을 내용으로 「근로복지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4498호, 2016.12.27. 개정, 2017.6.28.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임
- 가. 우리사주 수탁기관 업무지원 범위 확대(안 제22조의2)

1) 중소기업은 우리사주 담당 전문인력의 부족, 비상장법인은 우리사주 환금성 부족 등으로 우리사주의 도입 및 활용에 어려움을 겪는 실정이므로 관련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음.

2) 우리사주 수탁기관의 증권금융 전문가가 우리사주조합 업무의 지원, 우리사주 매매관련 정보 제공, 우리사주 관련 교육·홍보·자문 등 서비스 제공을 통해 비상장기업 등의 우리사주 도입이 촉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비상장법인의 우리사주 환매수 의무화(제27조제1항, 제27조의2)

1) 비상장기업 우리사주의 환금성(換金性) 강화를 위해 회사의 환매수를 의무화함에 따라, 이를 적용할 기업의 규모 및 예탁기간, 경영사정을 반영할 수 있는 세부 사항 등을 규정할 필요가 있음

2) 비상장법인 중 독립된 외부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는 기업(종업원 300인 이상, 자산총액 70억원 이상)을 대상으로 환매수 의무화를 적용하고, 근로자의 장기근속을 통한 생산성 향상 및 재산형성에 도움이 되도록 의무예탁기간(1년)과 별도로 6년의 추가예탁기간을 설정하였으며, 회사의 상장여부 또는 결산자료 등의 객관적 지표를 기준으로 분할 환매수 및 환매수 의무면제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하여 회사의 경영사정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등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우리사주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다. 우리사주조합을 통한 회사인수 지원(안 제29조의2)

1) 회사의 지속적인 경영이 어려운 경우 제3자 매각 또는 폐업보다는 우리사주조합원 자격 및 차입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여 근로자가 우리사주조합을 통해 회사를 인수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회사인수의 방법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우리사주조합이 회사의 발행주식 총 수의 30% 이상 취득을 통해 최대주주가 되는 경우를 회사 인수로 규정하여, 안정적인 기업경영을 통해 고용유지 및 기업의 장기성장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우리사주조합원의 자격에 대한 인용법령 개정에 따른 보완(안 제10조제2항제1호 및 제2호)

1) 우리사주조합원의 자격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회사의 최대주주와 그의 특수관계인’의 개념에 대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

를」 조항을 인용하였으나, 동 법률이 ‘15.7.31. 제정된 「금융회사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관련 조항을 인용하는 것으로 개정됨에 따라 정비할 필요가 있음

2) 최대주주와 그의 특수관계인의 개념에 대해 「금융회사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내용을 직접 인용하는 것으로 개정하여 우리사주조합원의 자격을 판단하는데 따른 불편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임

26. 국민안전처의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민안전처)

- 예고일자 : 2017. 1. 26. • 마감일자 : 2017. 1. 31.
- 북한의 국지도발 등 위기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안전정책실 소속의 비상대비민방위정책관을 비상대비정책국으로 분리·신설하고, 기획조정실 소속의 비상안전기획관을 비상대비정책국 소속의 비상대비민방위심의관으로 개편하며, 2019년 2월 28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비상대비정책국에 위기관리지원과를,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에 해양경비안전상황실을 두고, 위기관리지원과에 필요한 한시 정원 2명(4급 1명, 5급 1명)을 증원하며, 공동이용 비밀 관리·재난안전통신망·소규모 공공시설 정비·중앙소방특별조사단·중앙119구급상황관리센터 운영인력 등으로 37명(4 5급 3명, 5급 8명, 6급 7명, 7급 13명, 소방령 5명, 소방위 1명)을 증원하는 한편, 해양에서의 국민안전 최우선 실현 및 구조 안전 업무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2019년 2월 28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해양경비안전본부의 해양경비안전국을 분리하여 해양구조안전국을, 중부·서해·남해해양경비안전본부에 해양구조안전과를, 군산·여수·통영해양경비안전서에 장비관리과를, 신임 교육생들의 체계적인 학생관리를 위해 해양경비안전교육원에 학생과를 두고, 해양경비안전교육원 학생과에 필요한 한시정원 1명(경감 1명)을 증원하며, 재난안전예산 사전협의 대상 확대·재난의무보험 도입·중앙119구조본부 화학구조센터 특수차량 도입 등으로 81명(5급 3명, 6급 9명, 7급 2명, 전문경력관 가군 9명·나군 4명, 소방경 3명, 소방위 10

명, 소방장 5명, 소방교 3명, 연구사 2명, 경정 1명, 경감 1명, 경위 1명, 경장 8명, 순경 20명)을 증원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 호, 2017. . . 공포·시행)됨에 따라 신설되는 기구와 증원되는 인력을 반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7.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민안전처)

- 예고일자 : 2017. 1. 26. • 마감일자 : 2017. 3. 7.
- 유능한 소방위·지방소방위 직급의 승진기회 확대하고자 소방위·지방소방위 승진대상자명부의 작성기준을 3년에서 2년으로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8.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개정령(안) (국민안전처)

- 예고일자 : 2017. 1. 26. • 마감일자 : 2017. 3. 7.
- 둘째자녀 대상 육아휴직 시 그 휴직기간 전부를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에 산입하고, 징계처분요구나 징계의결요구 시에도 승진임용을 제한하는 한편, 소방경·지방소방경의 근속승진 인원범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 육아휴직자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 산입 확대(안 제5조)
한 자녀 이후 육아부담 등을 이유로 출산 중단·포기 현상이 증가하여, 승진부담 없이 육아에 전념할 수 있도록 둘째 자녀 대상 육아휴직 시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 산입 확대(1년 → 3년)
- 나. 승진임용제한 추가(안 제6조)
징계처분요구와 징계의결요구시에도 승진임용을 제한하도록 하며, 성폭력, 성희롱 및 성매매로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징계처분에 따른 일반적인 승진임용 제한기간을 3개월 더한 기간동안 승진임용할 수 없도록 함.
- 다. 소방경·지방소방경으로의 근속승진 인원범위 확대(안 제6조의2)

소방경·지방소방경의 근속승진이 가능한 인원 수 범위를 근속승진 후보자의 100분의 20에서 100분의 30으로 확대함.

29. 「소방공무원교육훈련규정」 일부개정령(안) (국민안전처)

- 예고일자 : 2017. 1. 26. • 마감일자 : 2017. 3. 7.
- 소방공무원의 직무역량과 현장대응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시설, 장비 등 설치기준을 마련하고 신규임용자 교육과정 중 중도포기자 및 의무복무 미이행 시 소요경비를 반납하게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 소방공무원 교육훈련시설·장비 설치기준 마련(안 제5조의2 신설)
소방공무원의 직무역량과 현장대응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시설과 장비 설치기준을 마련함.
- 나. 신규임용자 복무의무 추가 및 소요경비 반납(안 제10조)
신규임용자의 의무복무를 추가하고, 신규임용자과정 중도포기 및 의무복무 미이행자에 대한 소요 경비를 반납하도록 함.
- 다.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기관의 강사요건 수정(안 제18조)
강사의 자격요건을 완화하여 민간전문가도 강사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

30.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경찰청)

- 예고일자 : 2017. 1. 26. • 마감일자 : 2017. 2. 6.
- 경찰청 교통국장의 직급을 경무관에서 치안감으로 상향하고, 대구성서경찰서장 직급을 총경에서 경무관으로 상향하며, 대테러대응 역량 등을 강화하기 위해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 대테러위기관리관 등 한시조직을 신설하고, 그에 필요한 인력 53명(경무관 2명, 총경 3명, 경정 4명, 경감 8명, 경위 8명, 경사 10명, 경장10명, 순경 8명)을 한시적으로 증원하며, 지역경찰·교통사고 조사 등 민생치안인력 572명(경정 13명, 경감 47명, 경위 30명, 경사 141명, 경장 150명, 순경 188명, 행정 7급 1명, 공업연구사 1명, 기록연구사 1명)을 증원하고, 2017년 2월 28일 존속기한이 만료되는 한시조직 중 경찰청 수사기획관을 2018년

2월 28일까지 연장하며, 경기도북부지방경찰청 차장 등을 정규조직으로 전환하는 내용으로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17. 0. 00. 공포 및 시행)됨에 따라 증원되는 인력의 직급별 정원을 정하고, 신설조직의 담당사무를 분장하는 한편, 경찰청 소속 일반직 공무원 인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일반직 관리 운영직군 336명(본부 75명, 소속기관 261명)의 정원을 유사직렬로 전환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1.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교육부)

- 예고일자 : 2017. 1. 26. • 마감일자 : 2017. 2. 6.
- 교원 확보율 개선을 통한 국립대학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50명(교수·부교수 또는 조교수 50명)을 증원하되, 이 중 9명은 대학의 조교 9명을 감축하여 활용하고, 국립 각급 학교의 효율적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20명(6급 1명, 7급 16명, 8급 1명, 9급 1명, 연구사 1명)을 각각 증원하고, 「공무원징계령」 개정(2015. 8. 3. 개정, 2016. 1. 1. 시행)으로 국립대학의 6급 이하 공무원에 대한 징계관할권이 대학에서 교육부로 변경되어 국립의 각급 학교 인력 1명(전문경력관 나군 1명)을 교육부로 이체하여 활용하는 내용으로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이 개정(대통령령 제 호, 2017. . . 공포·시행)됨에 따라 조정된 인력의 직급별 정원을 반영하는 한편, 정책역량 강화 및 사기진작을 위해 일부 직급을 상향조정하고,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일부직렬을 조정하려는 것임

32. 교육부의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교육부)

- 예고일자 : 2017. 1. 26. • 마감일자 : 2017. 2. 6.
- 교육부에 국립대학 자원관리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 진로교육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학생 정신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교육연구사 1명), 자유학기제 전면시행에 따라 필요한 인력 3명(5급 1명, 6급 1명, 교육연구사 1명), 대학구조개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지방교육재정 분석·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 소프트웨어 교육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 아동학대 방지대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교육시설 안전 관리 및 지진 대비에 필요한 인력 3명(5급 2명, 6급 1명)을 각각 증원하고, 징계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을 증원하되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1명(전문경력관 나군 1명)을 이체 받아 활용하고, 중앙교육연수원의 연수생 건강관리 등에 필요한 인력 1명(7급 1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 호, 2017. . . 공포·시행)됨에 따라 증원된 인력의 직급별 정원을 반영하는 한편, 정책역량 강화 및 사기진작을 위해 본부 및 소속기관 정원 중 일부 직급을 조정하고,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교육안전정보국 및 대학지원관 분장사무를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3.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인) (국토교통부)

- 예고일자 : 2017. 1. 26. • 마감일자 : 2017. 3. 8.
- 개발제한구역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개발제한구역 내 허가나 신고 없이 할 수 있는 행위에 양봉통을 설치하는 행위를 신설하고, 종교시설 경내(공지)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대상에 예수상, 기념비석 설치를 추가하여 명확히 규정하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토지매수 청구서 서식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려는 것임

34. 법제업무 운영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인) (법제처)

- 예고일자 : 2017. 1. 26. • 마감일자 : 2017. 3. 8.

○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훈령·예규 등 행정규칙의 적법성을 보다 적극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훈령·예규 등 행정규칙에 대한 해석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국회의원 발의 법률안 관련 정부 내부처협의 절차를 강화하고, 법제업무 이행 상황을 확인하고 개선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 국회의원 발의 법률안 관련 정부 내 부처협의 절차의 강화(법제업무 운영규정 개정안 제11조의2 제3항 후단 신설)

1) 국회의원이 발의한 법률안 관계 기관의 장은 정부의견의 통일이나 원활한 집행 등을 위하여 소관기관의 장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나, 제시한 의견이 국회 심의과정에서 반영되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기 어려움.

2) 관계 기관의 장이 제시한 의견에 대하여 소관기관의 장이 검토한 결과를 회신하도록 하여 원활한 부처협의를 이루어지도록 함.

나. 규제심사 대상 훈령·예규 등의 발령안 검토 근거 마련(법제업무 운영규정 개정안 제25조의2 신설)

1) 현재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후에 하는 심사는 대통령령으로, 규제심사 대상인 훈령·예규 등의 발령안에 대한 검토는 대통령훈령으로 각각 정하고 있으나, 훈령·예규 등의 발령 전과 발령 후에 하는 심사·검토의 근거를 대통령령으로 일원화하는 것이 필요함.

2)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안에 대하여 규제심사를 요청하는 경우 법제처장에게도 검토를 요청하도록 하고, 법제처장은 법령 위반 여부 및 위임범위 이탈 여부 등을 검토하여 규제개혁위원회 등에 그 의견을 알리도록 함.

다. 행정규칙에 대한 해석제도 도입(법제업무 운영규정 개정안 제26조의2 신설)

1) 훈령·예규 등 행정규칙은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에도 법령 해석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민원 등의 처리 과정에서 훈령·예규 등 행정규칙 해석상 의문이 있어도 법령해석기관의 해석을 받을 수 없는 문제점이 있음.

2)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에 법령해석기관이 훈령·예규

등 행정규칙에 대해서 해석할 수 있도록 하여 행정운영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보장하려고 함.

라. 법제업무 이행 상황 확인·분석 등의 실시(법제업무 운영규정 개정안 제28조제2항 신설)

각 부처에서 수행하는 정부입법의 추진, 입법예고 제도의 운영, 하위법령 제때마련 및 법령정비 등 법제업무에 관한 확인·분석을 실시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각 부처에 개선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함

35. 법제업무 운영규정 일부개정령(안) (법제처)

- 예고일자 : 2017. 1. 26. • 마감일자 : 2017. 3. 8.
-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훈령·예규 등 행정규칙의 적법성을 보다 적극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훈령·예규 등 행정규칙에 대한 해석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국회의원 발의 법률안 관련 정부 내부처협의 절차를 강화하고, 법제업무 이행 상황을 확인하고 개선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 국회의원 발의 법률안 관련 정부 내 부처협의 절차의 강화(법제업무 운영규정 개정안 제11조의2 제3항 후단 신설)
 - 1) 국회의원이 발의한 법률안 관계 기관의 장은 정부의견의 통일이나 원활한 집행 등을 위하여 소관기관의 장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나, 제시한 의견이 국회 심의과정에서 반영되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기 어려움.
 - 2) 관계 기관의 장이 제시한 의견에 대하여 소관기관의 장이 검토한 결과를 회신하도록 하여 원활한 부처협의를 이루어지도록 함.
- 나. 규제심사 대상 훈령·예규 등의 발령안 검토 근거 마련(법제업무 운영규정 개정안 제25조의2 신설)
 - 1) 현재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후에 하는 심사는 대통령령으로, 규제심사 대상인 훈령·예규 등의 발령안에 대한 검토는 대통령훈령으로 각각 정하고 있으나, 훈령·예규 등의 발령 전과 발령 후에 하는 심사

· 검토의 근거를 대통령령으로 일원화하는 것이 필요함.

2)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안에 대하여 규제심사를 요청하는 경우 법제처장에게도 검토를 요청하도록 하고, 법제처장은 법령 위반 여부 및 위임범위 이탈 여부 등을 검토하여 규제개혁위원회 등에 그 의견을 알리도록 함.

다. 행정규칙에 대한 해석제도 도입(법제업무 운영규정 개정안 제26조의 2 신설)

1) 훈령·예규 등 행정규칙은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에도 법령 해석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민원 등의 처리 과정에서 훈령·예규 등 행정규칙 해석상 의문이 있어도 법령해석기관의 해석을 받을 수 없는 문제점이 있음.

2)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에 법령해석기관이 훈령·예규 등 행정규칙에 대해서 해석할 수 있도록 하여 행정운영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보장하려고 함.

라. 법제업무 이행 상황 확인·분석 등의 실시(법제업무 운영규정 개정안 제28조제2항 신설)

각 부처에서 수행하는 정부입법의 추진, 입법예고 제도의 운영, 하위법령 제때마련 및 법령정비 등 법제업무에 관한 확인·분석을 실시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각 부처에 개선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함.

36.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안) (기획재정부)

• 예고일자 : 2017. 1. 31. • 마감일자 : 2017. 2. 7.

○ 국내기업이 해외에서 직접 수행한 온실가스 감축실적에 대해서는 제2차 계획기간부터 국내 배출권 거래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신·증설 시설에 대한 배출권 할당을 추가할당으로 일원화하며, 위임·위탁 근거 규정을 보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 배출권의 무상할당비율의 기준 명확화(안 제13조, 별표1)

2차 계획기간('18~' 20년)부터 시작되는 배출권 유상할당과 관련하여 무상할당대상 업종 선정 기준 및 무상할당량 기준이 불명확하여 보완
나. 신·증설 시설 및 사업계획·생산품목 변경에 대한 이원화된 할당방식을 추가할당으로 일원화(안 제21조)

예상된 신·증설 시설 및 사업계획·생산품목 변경에 대해 실적치가 아닌 예상치를 근거로 사전 할당하고 있어 실적치와 예상치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할당량 산정시 불합리한 점이 발생할 수 있어 실적치를 근거로 한 추가할당으로 일원화

다. 배출권의 제출기한 미비사항 보완(안 제35조, 제37조)

배출권 할당의 조정·추가할당, 할당의 취소에 대한 이의신청 시 배출권 제출기한 및 이월·차입 기한도 연기되도록 보완

라. 권한의 위임·위탁 규정 마련(안 제49조, 제49조의2)

적합성 평가 업무 등에 대한 권한 위임·위탁 규정 마련

마. 해외 온실가스 감축실적의 조기인정(안 부칙<제24180호, 2012.11.1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감축 활동의 촉진을 위하여 국내 기업 등이 외국에서 직접 실시한 감축실적에 대해서는 제2차 계획기간부터 그에 상응하는 배출권으로 전환하여 줄 것을 인정

37.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인) (보건복지부)

• 예고일자 : 2017. 1. 31. • 마감일자 : 2017. 3. 13.

○ 가. 등급별 과징금 조정 및 과징금 산정기준 개선(안 별표 7 개정)

위반사업자의 연간 총수입액을 구간화하여 등급별로 과징금액을 단일 부과하던 방식을 실제 1일 평균수입액을 기준으로 기관별 부과비율에 따라 개별 산정하는 방식으로 변경함

38. 경찰공무원 징계령 일부개정령(인) (경찰청)

• 예고일자 : 2017. 1. 31. • 마감일자 : 2017. 3. 13.

○ 경찰공무원에 대한 징계위원회의 위원 구성인원을 확대하고, 민간 징

계위원을 징계위원의 과반을 참여하도록 하는 한편, 민간부문에서 인사·감사 업무를 담당하는 임원급 인사 등을 위촉할 수 있도록 자격 범위를 확대하여 징계행정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도모하려는 것임

○ 가. 징계위원회 구성 인원 확대(안 제6조 제1항)

1) 중앙징계위원회와 보통징계위원회 구성인원을 ‘5명 이상 9명 이하’ 로 확대함

나. 민간 징계위원 참여비율 상향 및 자격범위 확대(안 제6조 제3항)

1) 민간 징계위원 참여비율을 징계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징계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한 전체 위원들의 과반수’ 로 상향함

2) 민간위원의 위촉대상을 공무원 징계와 동일하게 ‘민간부문에서 인사·감사 업무를 담당하는 임원급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위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도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경찰 공무원이 아닌 일반 공무원으로 퇴직한 사람 중 인사·감사 업무 분야 경력자도 민간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확대함

39. 검찰서건사무규칙 일부개정령(안) (법무부)

• 예고일자 : 2017. 1. 31. • 마감일자 : 2017. 2. 10.

○ 개인정보 보호법 이 개정(' 17. 3. 30. 시행)되어, 대통령령 이상에 구체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주민등록번호의 처리가 허용됨에 따라, 새로이 제정하는 대통령령에 검사 및 검찰청 소속직원 등이 형사소송법 등 법령에 따라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민감정보, 고유식별정보 등을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현행 시행규칙상 주민등록번호의 수집근거 규정을 폐지하려는 것임

40. 인사혁신처의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인사혁신처)

• 예고일자 : 2017. 1. 31. • 마감일자 : 2017. 2. 6.

○ 인사혁신처에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강화, 공무원 채용시험제도 개선, 시험출제 관리 강화, 성과평가 체계 개편, 퇴직공무원 활용 지

원, 공무원 비상근무 대응 및 국가인재개발원의 신입관리자과정 개편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8명(4·5급 1, 5급 3, 6급 3, 7급 1)을 증원하고, 일반직 중 통계업무를 담당하는 정원(5급 1명)을 전문경력관(가군 1명)으로 조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 호, 2017. . . 공포·시행)됨에 따라 인사혁신처 증원 인력을 직급별 정원에 반영하는 한편, 인력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운전원 9급 정원 1명을 7급으로 상향조정 하고, 고위공무원단 후보자양성과정 운영계획의 수립 및 교육대상자의 선발·관리 기능을 심사임용과장에서 인재정책과장으로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41. 여성가족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인) (여성가족부)

- 예고일자 : 2017. 1. 31. • 마감일자 : 2017. 2. 3.
- 직제 개정에 따라 증원되는 인력의 직급별 정원을 정하는 등 내부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정하려는 것임. (자세한 내용은 아래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참조)

42. 전자정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인) (행정자치부)

- 예고일자 : 2017. 2. 1. • 마감일자 : 2017. 2. 13.
- 행정정보 공동이용의 기반시스템인 정부디렉토리시스템 구축·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시스템 운영을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자료의 처리 권한도 부여하고자 함. 아울러 기관별 시스템 구축 시 중복투자 방지, 유사시스템간 연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사전협의 대상을 공공기관까지 확대하고자 함
- 가. 정부디렉토리시스템 구축·운영 근거 신설 (안 제35조의5 신설)
 - 1) 행자부장관에게 행정기관등의 조직·직원정보, 전자문서 유통정보를 수집·통합 제공하는 ‘정부디렉토리시스템’ 구축·운영 권한 부여
 - 나. 디렉토리시스템 운영을 위해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 처리 근거 마련 (안 제90조제5항 신설)

- 1) ‘정부디렉토리시스템’을 통한 관련업무의 처리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자료의 처리 권한 부여
- 다. 중복투자 방지, 유사시스템간 연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사전협의 대상을 공공기관까지 확대(안 제82조 개정)
- 1) 정보화 사업의 중복성, 연계성, 타당성 등에 대한 검토 대상사업을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이 추진하는 사업’으로 변경

43.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인) (문화재청)

- 예고일자 : 2017. 2. 1. • 마감일자 : 2017. 3. 13.
- 국립국악고등학교 및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도 전수교육학교로 선정될 수 있도록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 일부개정(법률 제14434호, 2016.12.20. 공포, 2017.6.21. 시행)됨에 따라, “전수교육대학”을 “전수교육학교”로 용어를 변경하는 등 시행령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또한, 법률 제30조에서 위임한 사항 등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명확화하기 위해 선정·심사 관련 조항과 고시 위임 근거를 시행령에 신설하여 보완하려는 것임
- 가. 전수교육 과정 수료자 인정 범위 변경(안 제23조)
 - 나. 전수교육학교 선정·심사 조항 신설(안 제28조)
 - 다. 전수교육 계획을 수립하는 전수교육기관 변경(안 제28조)
 - 라. 문화재청장이 지원할 수 있는 전수교육기관 변경(안 제29조)
 - 마. 문화재청장의 성과평가 대상이 되는 전수교육기관 변경(안 제30조)
 - 바. 문화재청장이 국립무형유산원의 장에게 위임하는 권한 범위 변경(안 제35조)

44. 중소기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인) (중소기업청)

- 예고일자 : 2017. 2. 1. • 마감일자 : 2017. 2. 13.
- 중소 중견기업의 세계화 촉진을 위해 경영판로국에 국제협력과를 신설하고 국제협력과장은 4·5급 정원 1명을 4급 정원 1명으로 상향 조

정하여 보하며, 이에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을 증원하고, 중소기업청 소속으로 경북북부사무소, 전남동부사무소 및 강원영동사무소를 신설하여 지역 중소기업 지원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 8명(4 5급 2명, 5급 1명, 6급 2명, 7급 3명)을 증원하며, 지역 중소 중견기업에 대한 수출역량을 강화토록 필요한 인력 4명(7급 4명)을 증원하고 중소기업청과 그 소속기관의 성과평가제 적용 대상 한시조직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중소기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 호, 2017. . . 공포·시행)됨에 따라 증원되는 인력의 직급별 정원을 반영하고, 신설되는 사무소의 관할 구역 및 증원되는 한시정원의 직급별 정원을 정하는 한편, 운전직 공무원 중 9급 2명을 7급 1명과 8급 1명으로 직급을 상향시켜 지방중소기업청에 배정하고, 위생직 공무원 중 9급 1명과 방호직 공무원 중 9급 1명을 각각 8급 1명으로 직급을 상향시켜 국립고등학교에 배정하고, 총액인건비제로 운영하는 인력의 존속기간을 정하고, 일부 상향 조정된 정원을 원래 직급으로 환원하는 등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45.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인) (농림축산식품부)

- 예고일자 : 2017. 2. 1. • 마감일자 : 2017. 2. 6.
- 효율적인 농축산식품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경영인력과를 농촌정책국에서 농업정책국으로 이관 하는 등 농림축산식품부 내 실·국간 업무를 조정하고, 농촌관광 진흥, 농업가뭄 관리, 농업용 저수지관리, 쌀 직불제 관리 강화, 유기농업자재 효율적 관리, 반려동물산업 육성,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 등을 위해 필요한 인력을 증원하며, 농림축산식품부에 농어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 건립의 차질없는 수행을 위해 농어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추진팀을 신설하고, 대책사업인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사업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팀의 존속기간을 연장하며, 농림축산검역본부에 가축질병 및 식물병해충 관리 강화를 위해 청주가축질병센터, 광주가축질병센터 및 식물병해충예찰

방제센터를 신설하고, AI예방통제센터는 정규조직으로 전환하는 내용으로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 호, 2017. . . 공포·시행)가 개정됨에 따라 증원되는 인력의 정원을 반영하고, 조직내 유기적 연계 강화를 통한 업무효율성 도모를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인 농림축산검역본부 과간 소관업무를 일부 조정하고, 농림축산검역본부의 효율적 업무 추진을 위해 지역본부 간 관할구역역을 일부 조정하며, 한국농수산대학의 입학정원 확대에 따른 교육인력 및 행정인력을 확대하고, 국립종자원의 품종보호 심사 업무 강화를 위해 필요한 인력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 호, 2017. . . 공포, 2017. . . 시행)됨에 따라 한국농수산대학 및 국립종자원에 각각 증원되는 인력의 정원을 반영하려는 것임.

46.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해양수산부)

- 예고일자 : 2017. 2. 2. • 마감일자 : 2017. 2. 7.
- 해양수산부에 해양수산 분야 R&D 성과창출·산업화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수산식품 수출지원 확대에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해양수산 재난정보체계 구축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을 각각 증원하고, 어업관리단에 불법 어업 대응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3명(6급 4명, 7급 3명, 8급 6명), 한 중 공동합의 이행을 위하여 ‘IUU 공동단속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인력 3명(6급 1명, 7급 2명), 원양어업 조업감시 시스템 관리에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을 각각 증원하며, 지방해양수산청에 선박규모 증대 및 항해구역 확대에 대체 건조된 항만순찰선에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을 증원하고, 해양수산부에 2020년 1월 31일까지 국립해양과학교육관 건립 업무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한시정원 1명(4.5급 1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 됨에 따라 증원되는 인력의 직급별 정원을 반영하는 한편, 국립수산과학원에 수산자원연구센터 신설에 따라 필요한 자원조사·분석 인력 4명(과장급 연구관1,

연구사3)을 증원하고, 해양수산인재개발원에 교육과정 중 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6급 1)을 증원하며, 국립해양측위정보원에 국가 주요정보통신 기반시설인 측위정보시스템 정보보안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7급1)을 증원하는 등의 내용으로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 됨에 따라 해당 기관의 정원표에 증원된 정원을 반영하고, 소수 하위직의 사기진작을 위해 해양수산부의 운전직 9급 정원 2명을 6급 정원 1명과 7급 정원 1명으로 조정하고,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의 운전직 9급 정원 1명을 8급 정원 1명으로 조정하며, 어업관리단의 위생직 및 조리직 9급 정원 2명을 위생직 7급 정원 1명과 조리직 8급 정원 1명으로 각각 조정하고, 지방해양수산청의 방호직 9급 정원 1명을 8급 정원 1명으로 조정하며, 국립해양조사원 해양 2000호 선장의 지휘 및 통솔체계 정립을 위하여 6급 정원 1명을 5급 정원 1명으로 조정하고, 일반직과 연구직의 복수직 배정을 분리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47.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안) (해양수산부)

- 예고일자 : 2017. 2. 2. • 마감일자 : 2017. 2. 14.
- 「개인정보 보호법」(법률 제41497호, 2016.3.29. 공포, 2017.3.30. 시행)이 개정되어 주민번호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가 현행 ‘법령’에서 ‘법률·대통령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감사원규칙’으로 축소됨에 따라 법률·대통령령에 고유식별정보처리의 근거없이 부령으로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는 서식을 생년월일로 대체하는 등 개인정보를 목적 최소범위 내 수집하도록 관련규정을 정비하고자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8개 시행규칙을 일괄개정하려는 것임

48. 새만금개발청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새만금개발청)

- 예고일자 : 2017. 2. 2. • 마감일자 : 2017. 2. 7.
- 새만금 지역 내 국책사업에 대한 안전관리 및 현장점검과 효율적인 공용차량관리를 위하여 2명(6급 1명, 9급 1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새만금개발청 직제」(대통령령 제00000호, 2017. . . 공포·시행)를 개정 추진함에 따라, 증원된 인력의 직급별 정원을 반영하고, 하위직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운전원 1명 직급을 상향조정(9급 → 7급)하는 한편, 새만금특별법 개정에 따른 신규발생업무와 제도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새만금개발청 직제에 반영하려는 것임

49.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식품의약품안전처)

- 예고일자 : 2017. 2. 2. • 마감일자 : 2017. 3. 14.
- 「식품위생법」 제11조의2에 따라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를 의무화하고, 동 법 제75조제1항 제1호에 따라 제11조의2의 사항을 위반한 경우 허가취소 등 행정처분에 대한 「식품위생법」이 개정(법률 제13332호, 공포 2015.5.18, 시행 2017.5.19)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아울러, 상습·지속 위반자에 대한 처분규정을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차등 행정처분 기준 마련으로 제재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 위반에 대한 차등 행정처분 기준 등 신설(안 제89조 별표 23)
 - 1)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전자적 표시를 포함한다)를 하지 않거나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 사항에서 식품위생법 제11조에 따른 영양표시의 나트륨 값과 다른 값을 표시한 경우 품목 제조정지 15일 행정처분(신설)
 - 2) 도안 및 전자적 표시에서 기타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 방법을 위반한 경우 시정명령 처분(신설)

50. 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식품의약품안전처)

- 예고일자 : 2017. 2. 2. • 마감일자 : 2017. 3. 14.
- 「식품위생법」 제11조의2에 따라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를 의무화하고, 동 법 제101조 제1항 제1호의 2에 따라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비교 표시 기준 및 방법을 지키지 아니한 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식품위생법」이 개정(법률 제13332호, 공포 2015.5.18, 시행 2017.5.19)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아울러, 상습·지속 위반자에 대한 처분규정을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라 과태료 금액을 차등하여 부과할 수 있도록 과태료 부과기준 등의 마련으로 제재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차등 부과기준 등 신설(안 제67조 별표 2)
 - 1)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전자적 표시를 포함한다)를 하지 않거나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 사항에서 식품위생법 제11조에 따른 영양표시의 나트륨 값과 다른 값을 표시한 경우 100만원의 과태료 부과(신설)
 - 2) 도안 및 전자적 표시에서 기타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 방법을 위반한 경우 10만원의 과태료 부과(신설)

51. 문화체육관광부외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문화체육부)

- 예고일자 : 2017. 2. 2. • 마감일자 : 2017. 2. 13.
- 지진 등 재난·재해 대비 안전관리 인력 1명(5급 1명), 공연장 등 공연 시설 안전관리 인력 1명(6급 1명), 문화통상 및 저작권 국제협력 담당 인력 1명(전문경력관 가군 1명), 예술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원 3명(교수 3명), 국립국악고등학교 교원 1명(교사 1명),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 교원 2명(교사 2명), 국립민속박물관 시설 관리 총괄 및 이전 건립 담당 인력 1명(5급 1명), 국립한글박물관 전시 및 교육 관리 인력 2명(학예연구사 2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문화체육

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2017. 2. 공포·시행 예정)되고, 국립중앙극장 안전관리 인력 1명(전문경력관 나군 1명), 한국정책방송원 방송 취재 인력(7급 2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2017. 2. 공포·시행 예정)됨에 따라 증원된 인력의 직급별 정원을 반영하는 한편, 문화체육관광부의 하위직 사기 진작 및 조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직급 중 9급 12명을 6급 2명, 7급 4명, 8급 6명으로 각각 조정하려는 것임

52. 「중장기전략위원회 규정」 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

- 예고일자 : 2017. 2. 2 • 마감일자 : 2017. 3. 14.
- 국가발전을 위한 중장기 전략 수립의 중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중장기 전략위원회의 역할이 지속적으로 요구되므로 위원회를 계속 존치시키기 위하여 동 규정 제정 당시 부칙으로 정한 위원회 존속기한(2012년 4월 30일로부터 5년)을 삭제하려는 것임

53.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안전처)

- 예고일자 : 2017. 2. 3. • 마감일자 : 2017. 2. 23.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규정은 개별법에 있다고 하더라도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우선적으로 적용되나, 이 법에 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 중복되거나 배치되는 규정이 남아있어 과태료 징수 등 절차에 관한 법 적용의 혼선 및 불편을 초래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 중복되거나 배치되는 과태료 징수 등 절차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으로 일원화 하려는 것임
- 과태료 처분 불복 이의절차 조항, 과태료 재판 조항, 과태료 체납처분 준용 조항 삭제

54.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문화체육관광부)

- 예고일자 : 2017. 2. 3. • 마감일자 : 2017. 2. 13.
- 입장권 부정판매금지 의무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는 내용의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 14423호, '16.12.20 일부개정)됨에 따라 과태료 부과기준을 신설하려는 것임. 아울러, 이 법을 통해 보호하고자 하는 대회 관련 상징물중 누락된 대회 지식재산으로서 성화봉을 추가하는 등 법령 운영 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임
- 가. 조직위의 사전 사용승인을 받아야 하는 대회 관련 상징물의 추가 (안 제10조제1항)
IOC와 체결한 개최도시계약서 상 보호하도록 되어 있는 대회 지식재산은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으로도 보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중 중요 대회 지식재산인 성화봉과 그 결합물의 종류인 조형물이 현행 시행령에서는 누락되어 있는바 이를 추가하여 보완함으로써 매복마케팅 및 대회 지식재산 침해를 방지하고자 함.
- 나. 입장권 부정판매 금지 위반 시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별표2)
조직위 또는 조직위로부터 대회 입장권 판매위탁을 받은 자가 아닌 자가 조직위가 발행한 대회 입장권을 상습 또는 영업으로 자신이 구입한 가격을 넘은 금액으로 다른 사람에게 판매한 경우의 과태료 부과 기준을 설정함

55.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방송통신위원회)

- 예고일자 : 2017. 2. 3. • 마감일자 : 2017. 3. 15.
- 이동통신사업자 등의 조사 거부·방해 행위에 대한 실질적인 제재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기업 규모를 고려하여 과태료를 차등 부과하고, 보완이 필요한 일부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 가. 과징금 부과·납부 규정의 의미를 좀 더 명확히 하기 위해 서면고지의 대상자 추가(안 제11조제1항 개정)
- 나. 과징금 산정 시 「단말기유통법 시행령」에는 필수적 가중만 있고, 필수적 감경 규정이 없으므로 필수적 감경을 신설(안 [별표 2] 개정)
- 다. 이동통신사업자·대규모유통업자와 그 외의 자를 구분하고, 이동통신사업자·대규모유통업자의 경우 범위만 횡수에 상관없이 법률상 과태료 상한인 5,000만원을 일괄 부과(안 [별표 3] 개정)

56.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예고일자 : 2017. 2. 3. • 마감일자 : 2017. 3. 20.
- 65세 이상 고령 택시종사자의 증가에 따라 교통사고 발생 위험 등 사회적 우려에 대응하여 고령 택시종사자 자격유지검사를 도입하고, 연료전지자동차, 전기자동차 등 친환경자동차의 택시운송사업용 사용에 대한 활성화 기반 마련 및 민원제도상 현실과 부합하지 않는 부분을 개선함으로써 국민 편의를 향상시키고자 함
아울러, 정부는 수소차 시장 활성화 정책을 추진 중인 바, 수소차 보급 활성화를 위하여 현행 자동차 대여사업 등록 시 50대의 차량을 등록하게 하던 것을 수소차에 한하여 보다 적은 수의 차량으로 자동차 대여사업 등록이 가능하게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 가. 기존 택시운송사업의 구분 외에도 친환경자동차에 한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별도로 고시하는 기준을 적용(안 제9조제7호 신설)
- 나.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 신청시 반명함판 사진 2장을 제출에서 1장 또는 스캔본으로 제출토록 간소화(안 제18조제3호 및 별지 제7호 서식)
- 다. 택시운송사업의 구분을 변경할 때 기존 인가제를 신고제로 전환(안 제33조제6호 신설)
- 라. 만 65세 이상의 종사자에 대해 자격유지검사 도입(안 제49조제3항제3호)
- 마. 수소차대여사업 진입장벽을 완화하기 위하여 자동차대여사업 등록 시 수소차에 가중치 2.0을 부여